

## 일본측 질문사항에 대한 회답

### (질문 1)

한국에서는 이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稅에 관한 전자화가 일본에 비하여 매우 널리 보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전자화함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액공제외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일본에서 稅의 전자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참조하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200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전자신고를 시행한 후, 현재 한국에서의 전자신고는 완전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세액공제라는 메리트를 시행 초기부터 줌으로서 전자신고 비율을 증가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이외 다른 사유로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경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01년도가 17.2%, 2002년가 21.8%, 2003년도가 23.8%로 꾸준히 보급률이 증가되었으며, 2008년도말 기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4.9%(OECD 회원국 평균보급률 10.2%의 2배 수준)로서, 회원국 중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전자신고를 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전자신고 비율을 증가 시켰다고 보아 집니다.

#### 2. 주민등록제도 및 사업자등록번호제도

한국에서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산망에 접근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미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완벽하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전자신고가 원활하게 수행된다고 보여집니다.

#### 3.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직접 수행

수임업체의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세무정보 이용동의서를 사전에 수임계약과 동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계약이 된 경우 납세자의 전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이 세무사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직접 하는 점입니다. 수임 받은 업체는 전부 전자신고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로서는 어떠한 메리트가 있으며, 한편 불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이번에 한국세무사회가 전산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시큐리티를 포함하여 그 현상과 장래성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메리트 및 불리한 점

(1) 메리트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현행 세무사업계의 업무는 자료 수취 후 종이 전표 입력 작업을 거쳐야만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제도 하에서는 자료 수취 및 종이 전표 입력 작업이 생략되고 데이터 연동을 통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져 단순 업무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무사업계의 단순 업무 감소는 고객 거래처에 대한 양질의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이어져 고객사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로 세무신고 시 오류 발생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세무사업계의 업무착오로 인한 분쟁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감소시켜 줍니다.

(2) 불리한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의한 자동 연동 기장으로 세무사업계의 단순 자료 입력 업무가 감소함에 따라 고객사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제기될 될 경우 세무사업계의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법인의 세금계산서 월 마감에 따른 세무사업계의 상담 빈도가 증가하여 업무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으며, 영세한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더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하여 업무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에서는 월별 거래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데 단순 발행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사실관계가 복잡할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경우 보다 신속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어 이로 인한 세무사업계의 원가 상승이 수반될 수 있고, 유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책임문제 등으로 납세자와 세무사업계와의 다툼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세무사회의 전산법인 설립에 따른 시큐리티 및 장래성 등

현재 예상되는 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규모는 6억 건으로 추정되고 이는 1,200억원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며, 한국 내에서는 약 7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서 경쟁에 뛰어들 한국세무사회 설립 전산법인인 (주)한길TIS는 단순한 세금계산서 발행만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인 회계와의 연동을 통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동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세무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산법인의 수익성을 위한 1차 과제인 고객 확보는 고객 거래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8,500여명 한국세무사회 회원 세무사의 인적 재산을 이용할 계획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로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의 보안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 사항으로 우리회의 전산법인은 기능성, 보안성, 사후관리 등의 인증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기능,보안,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발생치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장은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로 그 규모가 확대 될 수 밖에 없고 세무사업계는 우리의 업무영역 확보를 위한 시장 선점을 위해 전산법인을 설립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산법인 설립을 통해 거래처의 소중한 정보를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보호하고 선도할 수 있으며 전산법인 운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세무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질문 3)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시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는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으나, 세무사 명칭사용 독점은 생략하였습디만, 이 개정 이후 실제로 세무사로 등록을 한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감소한 것입니까?

(답변)

발표자료 중 세무대리인 현황에서 (1)국세청 세무대리인 등록현황에서 2004년부터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2003년 이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공인회계사와 2004년부터 합격한 공인회계사의 수가 반영되어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는 2003년 이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신규로 등록한 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2004년부터 합격한 변호사는 국세청세무대리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구분	자격사별 총수		국세청세무대리등록		세무사회등록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4년	7,886	6,888	5,740	428	151	26
2005년	9,267	7,693	6,447	515	157	26
2006년	10,137	8,425	6,819	549	159	24
2007년	11,068	9,226	7,221	586	155	25
2008년	12,191	10,174	8,030	620	159	24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이후 국세청세무대리등록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등록비율이 직전 년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자격사 대비 세무대리 등록비율은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2004년 72%, 2005년 69%, 2006년 67%, 2007년 66%, 2008년 65%이고, 변호사는 매년 평균 6%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 받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의 등록 독려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록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세무사법 개정 이후 세무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교육관련 의무규정」 「징계관련 규정」 「업무(비밀엄수·신의성실)규정」 「벌칙규정」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① 무엇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② 그 결과 제도운영상 피해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 ③ 향후, 축소·폐지 할 예정은 있습니까?

게다가, 한국에서는 「국세청 등록 세무대리인」 「세무사회 등록의 세무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운영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답변)

① 먼저 2003년 개정 이후 2004년부터 합격한 변호사는 국세청의 세무대리 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해 변호사의 고유직무로 포괄적인 법률사무의 일환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대리인으로서의 세무사법적용이나 세무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② 자격사가 세무대리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사등록부(세무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공인회계사)에 등록을 하면 세무대리관리번호가 부여되며, 매년 세무조정반을 구성하여 국세청에 신청을 해야 하나, 2004년부터 합격한 변호사는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등록, 관리번호 부여 및 조정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이 있으면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세무대리업무(기장 및 세무조정 등)를 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있어, 국세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③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을 폐지하기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면 변호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에서 그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각 자격사가 세무대리를 할 경우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03년 개정 이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와 개정 이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세무사회의 회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두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는 없으나, 여러 번의 세무사법개정으로 2003년 이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개정 이후 세무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사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 법 집행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 韓國側 事前質問 事項

### (질문 1)

회계참여제도는, 2006년5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로서 이 제도를 내외에 보급·육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전 회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회사의 고문세리사가 회계참여를 겸하고 있는 비율이 92.7%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회계참여에 대한 월 보수액이 10만엔 초과기업이 20.5%나 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회계참여를 설치한 업체가 1,580개회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회계참여도 설치하고 세무신고 시 서면도 첨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들 제도가 醸成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 (답변)

회계참여의 보수에 대하여는, 10만엔 초과 기업이 20.5%인 반면에, 10만엔 이하의 기업은 63.8%로서 조사대상 기업 중 과반수이상 차지하며, 그 중 5만엔 이하의 기업이 39.7%로 되어 있으며, 한 마디로 회계참여의 보수비용이 높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참여 보수는, 회사법에 따라 정관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거 정해지며, 보수액은 회사의 규모, 계산서류의 보존·명시를 포함한 의무제공의 정도 및 책임정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확실히 회계참여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세리사보수 이외에 회계참여 보수를 부담함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회계참여제도는 종래 상법 특례법상 대회사(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액 200억엔 이상의 주식회사)에게는,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감사법인)에 의한 감사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에서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이사의 업무집행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말함) 양쪽이 의무화 되어 있는 감사역의 확보는 어려우며, 회계감사인 감사는 신뢰성은 높이나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중소기업의 계산서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전문가인 세리사등이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함으로써 그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로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문세리사가 회계참여를 겸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문세리사가 본 제도의 PR을 적극적으로 해왔었고, 이에 적절하게 회계업무를 한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참여 설치회사가, 본 제도시행 후 3년여 경과한 지금 세리사 등록자 수 약71,600명에 비하여, 1,580개사 정도 머물러 있는 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 앙케이트 조사결과」 알 수 있듯이 회계참여제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기업이 26.4%로, 결코 본 제도의 주지가 불충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역시 이용자인 중소기업이 도입에 따른 명확한 메리트를 찾아볼 수 힘들다는 점과 도입한 경우의 금융기관 등의 인센티브가 아직까지는 도입동기까지 다다르지 않은 점 등입니다.

여기서, 본 회에서는 회계참여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주지로부터 보급 및 정착단계에 있다는 인식아래, 그 시책을 검토하여 실시해야 할 『회계참여보급 추진 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여 대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질문 2)

일본의 書面添附制度는 세무당국의 稅務調査前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므로써 세무집행의 원활화와 간소화에 이바지하고, 더불어 세무전문가의 입장을 존중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되는바, 서면첨부제도 시행 후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에서 서면첨부 및 의견진술에 의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 납세자에 대한 실지조사가 집행되지 않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 (답변)

2006사무 년도부터 2008사무 년도의 법인세의 서면첨부, 의견청취 및 실지조사 생략비율에 대하여, 아래표 그대로이며, 조사관련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 결과, 실지조사가 생략된 비율은 약30% 전후입니다.

그 원인으로, 첨부서면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부족 혹은 의견청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등 세리사 및 세무관공서 쌍방이 본 제도와 관련 입법취지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서, 의견청취를 포함한 서면첨부제도를 더 한층 보급·정착시키기 위하여 2008년6월13일부로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와 국세청이 합의하여,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는 첨부서면 작성시의 유의점과 기준이 되는 「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이, 국세청에서는 조사생략 통지의 구체적인 운용을 명기한 사무운영지침이, 2009년4월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본 사무운영지침에 대하여는, 2009년7월10일부터 실시되고, 새로이 도입된 문서에 의거 조사생략통지 비율에 관한 향후 동향의 근거로, 2009년도 실적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소득세에 관하여는, 국세청 기타 행정기관의 통계 등에서 구체적인 실적이 현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건 관련 회답에 대하여는 보류하겠습니다.

**세리사법 제33조의2 관련 서면첨부비율 (법인세)**

사무년도 항 목		2006사무년도	2007사무년도	2008사무년도
		신 고 건 수 ①	2,787천건	2,799천건
세 리 사 관 여 건 수 ②	2,414천건	2,434천건	2,438천건	
서 면 첨 부 건 수 ③	130천건	139천건	148천건	
서 면 첨 부 비 율 ③ / ②	5.4%	5.7%	6.1%	
의 건 청 취 비 율 ④	3.5%	3.4%	3.3%	
실 지 조 사 생 략 비 율 ⑤	32.9%	29.3%	36.0%	

(주)

1. 각 사무년도의 실적치에 대하여, 각년 7월부터 익년도 6월까지의 법인세 신고 기한이 도래하고, 제출된 신고서가 그 대상이다.
2. 의견청취 비율은, 서면첨부건수에 점하는 의견청취건수의 비율을 표시한다.
3. 실지조사생략 비율은, 의견청취건수에 점하는 실지조사를 생략한 건수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질문 3)

서면첨부제도 시행이 세리사 업계의 수익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면 이는 곧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되는바 이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이나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일본에서 세리사는, 사회적 역할을 높여 비즈니스 찬스를 증가시키는 한편, 세리사를 둘러싼 리스크도 증대하고 있는 현상이며, 본고의 주제인 서면첨부제도를 포함하여 우리 세리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어떻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사회로부터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리사법에 규정된 세리사의 권리인 서면첨부제도를 실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수익창출만이 아닌 고도전문가인 세리사가 업무수준과 품질향상의 관점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사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첨부서면은 신고내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 그 납세자에 대하여 우리 세리사가 어떠한 방법에 의거하였는지, 또는 세무상의 문제점을 어디까지 검토하였는지, 관여 정도, 그 과정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

세리사가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함으로서 세리사가 거래처인 납세자에 대하여 적정한 신고지도가 충실해져, 그 결과 실지조사가 생략되고 간소화로 이어진 경우에는, 조사로 인한 어려움이 회피되거나 경감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강화되면, 거래처와 계속 관계가 이어지며, 부차적인 효과입니다만 고도의 서비스 대가로서 고문보수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으며, 세리사 사무소(세리사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4)

서면첨부제도는, 2001년도에 세리사법을 개정 시, 적용범위가 확충된 후 매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2007년도 귀속 법인세의 경우, 서면을 첨부한 업체는 5.7%에 불과하여 현재는 醸成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 세리사회연합회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답변)

서면첨부제도는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 시 비약적으로 확충된 제도입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한대로 2006사무 년도의 서면첨부비율은 5.4%로 세리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2007년 3월 23일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국세청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 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에 관한 요망서」를 제출하여, ①「예고하지 않은 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 ②조사생략은 문서로 통지, ③의견청취와 실지조사와의 경계의 명확화, ④첨부서면 양식의 개선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일세련과 국세청간에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에 관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이 세리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신뢰 주는 세리사 제도 확립에 도움이 되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의 원활화·간소화에 기여하게 되어 양쪽에 많은 메리트가 있었으므로, ①이외의 요망사항이 받아들여져, 2008년6월13일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사항은, ①첨부서면 양식의 개선 ②조사생략 통지관계 ③세무서 직원 및 세리사회 회원에 대한 홍보 ④국세국과 세리사회 및 세무서와 세리사회 지부와의 협의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의 첨부서면 양식의 개선에 대하여는 2008년9월1일 이후부터 「접수인」란 및 「추가 기재사항」란 을 추가한 새로운 양식이 적용되었고, 2009년4월6일부터 국세 전자신고·납세시스템(e-Tax)에도 새 양식으로 접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②의 조사생략 통지에 대하여는, 본 합의사항 및 협의회와 WG(분과회)의 협의에 입각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양호한 첨부서면의 작성기준으로서 「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이, 국세청에서는 조사생략 통지에 관련한 「사무운영지침」이 2009년4월1일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호한 첨부서면에 관한 의견청취가 이루어진 결과, 조사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리사등에게 「현시점에서 조사대상은 아니다」라는 통지를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되었고, 본 제도의 운용면에서의 환경이 정비되었습니다.

일세련에서는 서면첨부제도의 본격적인 보급·정착과 원활한 조사생략통지를 위하여 세리사회 안에 상담창구, 또는 세무서와 세리사회 지부간 협의회설치를 추진 중이며, 연수회개최와 홍보를 통하여 본 제도를 침투 시키는 여러 가지 대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

(질문 5)

지금 한국에서도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청에 「중소기업 성실신고 검증제」라는 제도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기 위하여 지금 그 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외부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그 연구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이에 대하여 조언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면첨부제도 중 장점으로써 한국측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 등입니다.

(참고: 한국의 「중소기업 성실신고 검증제(예정)」란, 세무조사 방식의 개선작업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검증을 받음으로, 세무조사에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답변)

본고에 기재된 대로, 세리사가 서면첨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1970년 세리사법 개정 시 일본의 「조세법률주의」와 「신고납세제도」를 구현화 한 세리사법 제1조의 「세리사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조세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절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인 동시에 적절한 신고와 납세에 입각하게 됩니다만,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세무 및 회계 모든 분야에서 정통한 고도전문가인 우리 세리사들입니다.

세리사와 세무행정의 본질적인 역할은, 세리사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충실한 신고지도, 그리고 세무행정에서는 세리사를 존중하는 자세와 세리사의 엄정한 신고지도를 받은 적절한 신고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신고를 시인하거나,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게다가 적절한 납세가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세리사가 관여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서면첨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또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항목사항으로 열거해 보면

1. 세리사의 업무수준의 향상
2. 세리사의 책임범위의 명확화
3. 거래처 납세자와의 신뢰관계를 더한층 구축
4. 세무 및 회계에 관한 고도전문가로서의 세리사의 사회적 지위향상
5. 실지조사 생략에 따른 거래처 납세자의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경감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귀국에서 「중소기업 성실신고 검증제(예정)」가 세무조사 방식의 개선작업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이른바 「사전 검증」이 세무조사방식에 대신한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와 관련한 「실지조사 생략」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귀국의 성과에, 일본의 서면첨부제도가 좋은 지표가 되도록 강력하게 바랍니다.